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Ways to Improve Premium Setting for Residence-based participant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온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는 도입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최근 소득 상승이나 주변환경의 변화 등으로 지역 부과체계의 단기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현재 너무 복잡한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고, 소득이나 재산에 역진적으로 설계된 등급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먼저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500만원을 기준으로 평가소득과 종합소득으로 구분되었던 기준을 없애고, 4가지 요소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하였다. 4가지 요소는 기본보험료, 소득, 재산, 자동차 보험료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평가소득에 재산과 자동차를 재반영하여 이중부과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소득, 재산 등급표의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해 등급표를 정률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단순 명료화, 이중부과나 30등급 등 세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였고, 소득과 재산의 역진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직장과 소득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어가는 중간단계로서의 개선방안이었다.

## 1. 서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이후 직장건강보험은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며 대상자를 넓혀갔다. 이후 직장에서 제외되어 있던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실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81년부터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1988년에는 지역의료보험이 농어촌지역부터 실시되었고, 1989년 7월부터는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함으로써 '전국

민건강보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지역의료보험이 시작하면서 가장 큰 과제는 소득과약이 곤란한 농어민, 자영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의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형평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또한 1998년 10월부터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고, 2000년 7월에는 직장과 지역조합이 단일 보험자로 건강보험이 통합되었으며, 2003년에는 재정까지 통합되는 등 완전 단일 건강보험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직장 지역간에 직장가입자들은 소득에 기반하여 정률로 보험료가 부과하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약의 한계로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 부과요소를 사

용하고 있어 직장간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부과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직장간 이동시 보험료의 변동이 심하고, 특히 재산이 많은 직장가입자가 실직에 의해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소득은 감소하였으나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 직장간 자격 이동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부과체계의 이원화는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어 이를 해결할 단일부과체계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직장, 지역간의 형평한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인철 외(1999년) 연구를 필두로, 최병호 외(2001년), 백운국 외(2002년), 차흥봉 외(2004년), 공경열 외(2006년), 신영석 외(2007년) 등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직장, 지역간의 단일한 부과체계 개발은 건강보험부과체계상의 문제보다는 국세청의 지역자 소득과약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되었고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에 형평한 단일 부과체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단기간 안에 직장 지역간에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은 어렵고, 단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험료부과체계가 가야할 방향과 방법 등을 제시하는 수준에 멈추고 있다.

직장, 지역간의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았지만, 단기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체계는 1998년부터 10여년을 넘게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의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는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하고 현행 부과체계상의 계속되는 문제 제기 등으로 부과체계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특히 부과체계의 복잡성이나,

소득이 계속적으로 상승한 시점에서 1998년에 설정한 500만원 기준에 따른 이원화된 부분, 평가소득 보험료 30등급에 집중현상, 여전히 상존하는 이중부과 문제, 소득과 재산 등급의 역진성 등 현행 부과체계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10여년이 넘게 흘러 단기적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의 단기 개선방안 중심으로 고민해 보았고, 몇 가지 개선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모의운영 방법과 결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의 변천과정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과거 보험료부과체계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의 새로운 방향을 가늠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981년 '1차 의료보험 시범사업'의 부과체계는 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등정액을 부과하되, 피보험자수(가구원수)를 곱하여 세대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부과 기준은 조세부담액, 경작규모 및 생활정도 등이 적용되었으며, 등급별 세대 분포는 1등급 10%, 2등급 80%, 3등급이 10% 수준이 되도록 하였고, 등급의 결정은 리·동 별 개발위원회가 결정하거나 조합에서 최종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2차 시범 사업에서는 기본보험료와 능력비례

보험료로 산정하되, 부과 근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기반하도록 하였다. 기본 보험료는 세대균등할(정액)+피보험자균등할(세대원 1인당 정액×세대원 수)로 산정되었으며, 능력비례보험료는 소득할+자산할로 구성하였다. 소득할은 소득세와 농지세의 수준에 따라, 자산할은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수준에 따라 각각 7등급으로 구분된 차등정액 보험료로 산정되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시대의 부과체계에서는 시범사업 모형을 일부 수정한 후 적용하였는데 크게 기본보험료와 능력비례보험료로 구분하였다. 기본보험료는 세대당 보험료와 세대원수에 따라 부과되는 세대원당 보험료로 구분하였다. 능력비례 보험료의 경우는 '소득비례 보험료+재산비례 보험료+자동차보험료'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재산비례 보험료는 재산세 과표 상의 재산가액(토지, 주택) 또는 전월세금(재산세과표가 없는 세대의 경우)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는 배기량 또는 자동차 세액에 따라 차등화된 정액보험료를 부과하였다. 이때 모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5가지 요소인 세대, 가구원,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각각 보험료를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 보험료 모형이 통합모형으로 1998년까지 사용되었다.

현행 부과모형인 1998년 통합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핵심은 모든 지역가입자 세대를 과세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와 500만원 이하인 세대(무자료세대 포함)로 구분하고, 전자는 '과세소득 + 재산 +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평가소득 + 재산 +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다. 평

가소득 보험료는 과세소득 무자료세대와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적용하며,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를 가지고 소득을 산정하며 평가소득이 최고등급 30등급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과세소득 보험료는 종합소득, 연금, 근로, 농지소득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소득이 500만원 초과 세대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소득보험료 등급 31등급부터 시작하였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 세대보다는 소득보험료를 더 내도록 설계되었다. 재산보험료는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과세재산과 전월세금에 대하여 부과하였고 자동차보험료는 차의 배기량과 연식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 3.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와 문제점

### 1)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건강보험의 전체적인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현행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되어있다. 직장간 부과기준인 부과요소가 다르고 보험료 산정방법도 다르다. 부담주체도 구별되며 보험료 상하한선도 다르다. 구체적인 2008년도 부과체계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보수의 범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포괄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자목·카목 및 과목의 비과세소득과 실비보

표 1. 보험료부과체계 현황(2008년 현재)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	근로소득	보험료부과점수 <sup>1)</sup>
보험료 산정	근로소득 × 정률(5.08%)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48.9원)
부과기준의 상·하한	28만원~6,579만원	20점~11,000점
최저·최고 보험료(월)	14,200원~334.2만원(7,100원~167.1만원) <sup>2)</sup>	2,978원~163.7만원
보험료 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보험료, 국고, 담배부담금, 기타

주: 1)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사용자부담금 제외한 본인부담금

상적인 금품은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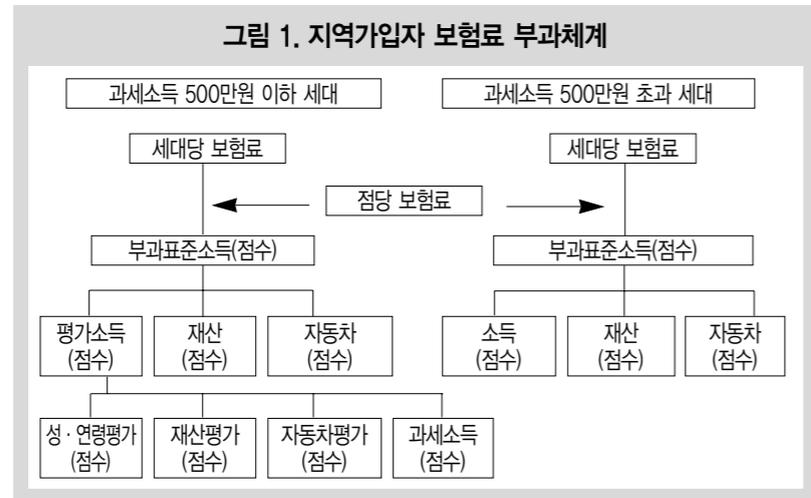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이러한 보수를 기준하여 정률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표준보수월액은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6,579만원으로 상·하한선이 있으며 2008년 현재 보험료율은 5.08%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다. 부과표준소득점수는 세대원이 보유한 각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 점

수를 세대단위로 합산하여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2008년 점수당 금액은 148.9원이다.

$$\begin{aligned} \text{○ 부과표준소득점수} &= \sum (\text{각 세대원의 소득(평가소득점수} + \text{재산점수} + \text{자동차점수}) \\ \text{○ 보험료} &= \text{부과표준소득점수} \times \text{점수당 금액} \end{aligned}$$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의 전체 모습은 다음 [그림 1]과 같지만, 보험료 산정절차는 복잡하다.



소득점수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와 그 이하 세대를 구분하여 달리 산정한다.<sup>1)</sup> 과세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70등급의 등급별 기준에 의해 소득점수가 부여되는 반면에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와 과세소득자료가 없는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른 30등급의 평가소득 점수가 부여된다. 평가소득보험료는 먼저, 성·연령, 재산, 자동차에 해당하는 점수와 500만원 이하의 과세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재산보험료는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과세재산과 전월세금에 대하여 50등급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료는 차의 배기량과 연식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구체적인 부과등급표와 자세한 계산방식은 지면의 한계상 생략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에서 민원업무안내 보험료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 2)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직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간략히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 보험료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과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지역 부과체계는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복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산정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누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며, 500만원 기준선도 1998년 기준에 따르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한 세대별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된 종합점수를 다시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적용시켜 최종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개인별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어 세대원이 늘거나 줄어도 보험료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요소이다. 다음은 이중 부과문제로 평가소득보험료 산정 시 재산, 자동차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또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중부과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등 평가요소의 상승 등으로 평가소득 30등급에 대상자가 집중하고 있어 30등급의 대상자는 부과요소의 증·감소시 보험료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다. 이 문제는 500만원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과체계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로는 지역 부과등급표 등이 역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상하한선이 있는 상태에서 정률이 적용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이 높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부과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험제도의 성격상 조세와 같이 누진율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원리는 능력에 맞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소한 부담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

1)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연금소득, 농지소득은 20%의 평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여야 하나 현행 부과체계는 역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600만원 과세소득자의 소득 등급별 점수가 380점이나 6,000만원의 소득자의 점수는 1,336점으로 소득은 10배가 증가하였으나 점수는 불과 3.5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재산의 경우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역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000만원 재산 보유자의 점수는 66점이나 1억 보유자의 점수는 439점으로 재산이 10배 증가하여도 점수는 6.6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 부분은 개선방안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그림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직장과 지역간 전체적인 부과체계상의 문제점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첫 번째 문제점은 직장간 피부양자 제도이다. 직장에서는 소득원이 있는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갖고 소득요건과 자격요건(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하여 보험료 부담을 면제받고 있으나 지역에서는 모든 세대원이 피부양자 자격을 갖게 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대가로 받는 보수만 부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기타 소득이 많은 집단과 일반 직장인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는 소규모 사업장이 직장으로 편입되면서 사업주가 보험료 이익에 따라 직장과 지역을 선택하여 보험료 탈루문제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지역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에 위장취업에 의한 보

험료 탈루문제 등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 학습지도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거의 다르나 특수형태의 자영자<sup>2)</sup>로서 사업소득에 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 4.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의 단기 개선방안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의 단기 개선방안은 위에서 제시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500만원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 이중부과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개선방안

지역부과체계 단기 개선모형은 현행 500만원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부과요소는 소득 500만원 구분없이 모두 소득, 재산, 자동차, 기본보험료 등 4가지를 사용하였다. 현행 부과체계에서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세대에서 경제

활동을 추정하는 대리 변수로 사용되었던 성, 연령 점수를 기본보험료로 바꾸었다. 기본 보험료는 성, 연령에 상관없이 정액 부과되어야 하나 현행 보험료 부담액과 차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고민으로 인해 현행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본보험료는 연간 소득 500만원 이상 세대에도 도입하여 소득기준에 따른 이원화 구조를 단일체제로 바꾸고자 하였다.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는 500만원 이하세대에게 평가소득 추정을 위해 사용되었던 재산, 자동차요소를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로 배분하여 이중부과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소득 기준 단일 부과체제로 가기 위해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비중을 점점 줄여가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모든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 연령에 따라 모두 기본보험료를 부담하고,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가 있는 경우 각각 소유분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즉 4가지 요소에 따라 각각 보험료를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인별이든 세대별이든 보험료 계산이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현재 소득과 재산 보험료 등급표가 소득과 재산에 역진적으로 설계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정률방식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친 역진성으로 인해 정률방식이 도입될 경우 보험료 부담의 차이가 현격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정률방식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본 고의 개선방식에서는 단기적으로 개선된 정률방식으로 소득의 경우 정률을 이원화하였으며, 재산의 경우

정률을 3원화하여 제시하였다.

##### 2) 구체적인 방법 및 모의운영 결과

여기에서 제시된 안들은 현재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가지 가정 하에 제시된 안들로써 실제 개선시에는 등급표나 기타 세부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모의운영은 새로운 개선방향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된 사례이다.

##### (1) 제 1안

제 1안은 부과체계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동을 최소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 배분비를 현행 부과체계 배분비와 변동이 없도록 설계하였으며 배분비는 현행과 유사하게 기본: 소득: 재산: 자동차 = 20: 20: 45: 15 로 설계하였다. 하지만 실제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연령 보험료 부과등급표 등을 현행과 변동 없이 모의운영을 적용하였고 이러한 경우 500만원 이상의 세대에도 기본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행 성, 연령의 배분비보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계획한 배분비 보다 실제 배분비가 다른 것은 기본보험료의 현행 점수 틀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배분비가 같이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득등급표상의 소득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율 부과를 검토하였으나 정율 부과는 현행 보험료와의 변동 폭이 극심하므로 2단계로 구분하여 변동 정율 적용(연소득 3천만원 이하는 정율 0.6%를 적용하였고 그 이상은 3

2) 자영업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근로자와 유사한 피고용 형태이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로서 학습지도사, 보험설계사, 레미콘지입차주, 외판원, 퀵서비스 종사자, 가내·재택근무자를 말하며, 그 규모는 100만 명으로 추정된다(국민일보, 2006.6.4).

천만원까지 0.6% 그리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 정율 0.4%를 적용하였음하였다.

재산의 경우도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율 부과를 검토하였으나 정율 부과는 현행 보험료와의 변동 폭이 극심하므로 3단계로 구분하여 변동 정율 적용(재산 2억까지는 0.05%, 2억 이상 10억 미만은 0.03%, 10억 이상은 0.001% 적용)하였다.

위에서 적용된 정율은 현행 보험료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에 의해 선택되었다.

(2) 제 2안

장기적으로 소득 기준 단일 부과체계를 지향하기 위하여 1안보다 소득의 배분비를 확대하고 재산의 배분비를 감소하되 보험료 변동 폭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배분비는 기본: 소득: 재산: 자동차 = 20: 25: 40: 15로 설계하였다.

소득의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율 부과를 검토하였으나 정율 부과는 현행 보험료와의 변동 폭이 극심하므로 2단계로 구분하여 변동 정율 적용(연소득 3천만원 이하는 정율 0.7%를 적용하였고 그 이상은 정율 0.4%를 적용하였

음)하였다.

재산의 경우도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율 부과를 검토하였으나 정율 부과는 현행 보험료와의 변동 폭이 극심하므로 3단계로 구분하여 변동 정율 적용(재산 2억까지는 0.05%, 2억 이상 10억 미만은 0.03%, 10억 이상은 0.001% 적용)하였다.

3) 개선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등급표 및 결과

현행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의 모태인 1998년 당시 적용되었던 부과 요소 간 배분비가 현행 부과체계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동안 재산비례 보험료의 배분비는 약 11% 증가한 데 반해 평가소득보험료의 배분비는 약 13.9% 감소하였다. 자동차의 배분비도 약간 감소하여 1998년 7%이던 배분비가 2007년 현재 약 6%로 나타났다. 과세소득 500만원 이상세대에 적용되던 소득보험료의 배분비는 약 3.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재산 과표의 현실화가 배분비 변동의 주 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지역가입자 대상 보험료 부과체계의 배분비(2007년 7월)는 다음과 같다. 500만원이하

표 2. 부과요소별 보험료 배분비 현황

구분	전체	소득비례보험료			재산비례보험료		
		소계	평가소득	소득	소계	재산	자동차
설계시점('98.4월)	100	66.0	50.0	16.0	34.0	27.0	7.0
현재시점('07.1월)	100	56.0	36.1	19.9	44.0	38.0	6.0
증감	-	△10.0	△13.9	3.9	10.0	11.0	△1.0

세대의 평가소득보험료가 전체 보험료 비중 중 37.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성·연령이 17.79%, 재산이 10.05% 자동차가 7.53% 그리고 소득보험료는 2.28% 차지하고 있다. 500만원 이상 세대의 소득보험료는 17.95%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10.93%, 자동차 보험료의 비중은 1.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500만원 이상과 이하로 구분을 하지 않고 배분 요소별로 다시 재구성해 보면, 성·연령요소가 17.79%, 재산요소가 48.46%, 자동차

요소가 13.53%, 소득이 20.22%를 차지하였다.

개선방안별로 모의운영 한 결과 배분비는 1안의 경우 기본: 소득: 재산: 자동차 = 20: 20: 45: 15로 설계하였으나, 실제 배분비는 기본이 22.25%, 소득이 21.97%, 재산이 41.45%, 자동차가 14.98%로 나타났으며, 2안은 기본: 소득: 재산: 자동차 = 20: 25: 40: 15로 설계하였으나 실제 배분비는 기본이 22.25%, 소득이 25.33%, 재산이 38.41%, 자동차가 14.98%로 나타났다. 원래 설계모형과 배분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표 3. 현행 배분비 현황(2007년 7월)

구분	요소	세대수	부과대상 점수	배분비	
500만원 이하	평가 소득	전체	65,188	12,694,403	37.65
		성·연령		5,998,232	17.79
		재산		3,388,546	10.05
		자동차		2,538,881	7.53
		소득		768,745	2.28
		재산	65,188	9,266,706	27.48
	자동차	65,188	1,486,587	4.41	
	합		23,447,696	69.54	
500만원 이상	재산	10,179	3,684,344	10.93	
	자동차	10,179	534,285	1.58	
	소득	10,179	6,051,511	17.95	
	합		10,270,140	30.46	
500만원 이상 이하 합	경제활동	75,367	12,694,403	37.65	
	재산	75,367	12,951,050	38.41	
	자동차	75,367	2,020,872	5.99	
	소득	75,367	6,051,511	17.95	
	합		33,717,836	100	
요소별배분비	성·연령	75,367	5,998,232	17.79	
	재산	75,367	16,339,663	48.46	
	자동차	75,367	4,562,023	13.53	
	소득	75,367	6,817,746	20.22	

표 4. 모의운영을 한 결과 배분비

요 소	현행 배분비	1인(소득 20%) 배분비	2인(소득 25%) 배분비
성·연령	17.79	22.25	22.25
재산	48.46	41.45	38.41
자동차	13.53	14.98	14.98
소득	20.22	21.97	25.33

현실 적용을 고려하여 현행,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표의 소득의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한 소득, 연령 등급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기 때 특기준 등급별 개정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문이다. 모형 1의 경우 소득 수준 1500만원 까지 현행

표 5. 소득기준 등급별 개정보험료와 차액분포

등급	소득금액(만원)	현행 보험료	연간 보험료율	1인(소득 20% 반영)			2인(소득 25% 반영)		
				개정 보험료	개정 보험료율	차액	개정 보험료	개정 보험료율	차액
0	0	0	0.000	0	0.00	-	0	0.00	-
0	0 초과 ~ 100 이하	0	0.000	3,000	0.600	-	3,500	0.700	-
0	100 초과 ~ 200 이하	0	0.000	9,000	0.600	-	10,500	0.700	-
0	200 초과 ~ 300 이하	0	0.000	15,000	0.600	-	17,500	0.700	-
0	300 초과 ~ 400 이하	0	0.000	21,000	0.600	-	24,500	0.700	-
0	400 초과 ~ 500 이하	0	0.000	27,000	0.600	-	31,500	0.700	-
1	500 초과 ~ 600 이하	53,162	0.967	33,000	0.600	-20,162	38,500	0.700	-14,662
2	600 초과 ~ 700 이하	57,219	0.880	39,000	0.600	-18,219	45,500	0.700	-11,719
3	700 초과 ~ 800 이하	61,136	0.815	45,000	0.600	-16,136	52,500	0.700	-8,636
4	800 초과 ~ 900 이하	65,193	0.767	51,000	0.600	-14,193	59,500	0.700	-5,693
5	900 초과 ~ 1,000 이하	69,111	0.727	57,000	0.600	-12,111	66,500	0.700	-2,611
6	1,000 초과 ~ 1,100 이하	73,168	0.697	63,000	0.600	-10,168	73,500	0.700	332
7	1,100 초과 ~ 1,200 이하	77,225	0.672	69,000	0.600	-8,225	80,500	0.700	3,275
8	1,200 초과 ~ 1,300 이하	81,142	0.649	75,000	0.600	-6,142	87,500	0.700	6,358
9	1,300 초과 ~ 1,400 이하	85,199	0.631	81,000	0.600	-4,199	94,500	0.700	9,301
10	1,400 초과 ~ 1,500 이하	89,116	0.615	87,000	0.600	-2,116	101,500	0.700	12,384
11	1,500 초과 ~ 1,600 이하	93,173	0.601	93,000	0.600	-173	108,500	0.700	15,327
12	1,600 초과 ~ 1,700 이하	97,231	0.589	99,000	0.600	1,770	115,500	0.700	18,270
13	1,700 초과 ~ 1,800 이하	101,148	0.578	105,000	0.600	3,852	122,500	0.700	21,352
14	1,800 초과 ~ 1,900 이하	105,205	0.569	111,000	0.600	5,795	129,500	0.700	24,295

〈표 5〉 계속

등급	소득금액(만원)	현행 보험료	연간 보험료율	1인(소득 20% 반영)			2인(소득 25% 반영)		
				개정 보험료	개정 보험료율	차액	개정 보험료	개정 보험료율	차액
15	1,900 초과 ~ 2,020 이하	109,122	0.557	117,600	0.600	8,478	137,200	0.700	28,078
16	2,020 초과 ~ 2,140 이하	113,179	0.544	124,800	0.600	11,621	145,600	0.700	32,421
17	2,140 초과 ~ 2,270 이하	117,236	0.532	132,300	0.600	15,064	154,350	0.700	37,114
18	2,270 초과 ~ 2,410 이하	121,153	0.518	140,400	0.600	19,247	163,800	0.700	42,647
19	2,410 초과 ~ 2,560 이하	125,211	0.504	149,100	0.600	23,890	173,950	0.700	48,740
20	2,560 초과 ~ 2,710 이하	129,128	0.490	158,100	0.600	28,972	184,450	0.700	55,322
21	2,710 초과 ~ 2,880 이하	133,185	0.477	167,700	0.600	34,515	195,650	0.700	62,465
22	2,880 초과 ~ 3,050 이하	137,242	0.463	177,900	0.600	40,658	207,550	0.700	70,308
23	3,050 초과 ~ 3,240 이하	141,159	0.449	188,700	0.600	47,541	215,800	0.686	74,641
24	3,240 초과 ~ 3,430 이하	145,216	0.435	193,400	0.580	48,184	223,400	0.670	78,184
25	3,430 초과 ~ 3,640 이하	149,133	0.422	201,400	0.570	52,267	231,400	0.655	82,267
26	3,640 초과 ~ 3,860 이하	153,191	0.409	210,000	0.560	56,810	240,000	0.640	86,810
27	3,860 초과 ~ 4,100 이하	157,248	0.395	219,200	0.551	61,952	249,200	0.626	91,952
28	4,100 초과 ~ 4,350 이하	161,165	0.381	229,000	0.542	67,835	259,000	0.613	97,835
29	4,350 초과 ~ 4,610 이하	165,222	0.369	239,200	0.534	73,978	269,200	0.601	103,978
30	4,610 초과 ~ 4,890 이하	169,139	0.356	250,000	0.526	80,861	280,000	0.589	110,861
31	4,890 초과 ~ 5,190 이하	173,476	0.344	261,600	0.519	88,124	291,600	0.579	118,124
32	5,190 초과 ~ 5,500 이하	177,813	0.333	273,800	0.512	95,987	303,800	0.568	125,987
33	5,500 초과 ~ 5,840 이하	182,290	0.321	286,800	0.506	104,510	316,800	0.559	134,510
34	5,840 초과 ~ 6,190 이하	186,906	0.311	300,600	0.500	113,694	330,600	0.550	143,694
35	6,190 초과 ~ 6,560 이하	191,803	0.301	315,000	0.494	123,197	345,000	0.541	153,197
36	6,560 초과 ~ 6,960 이하	196,839	0.291	330,400	0.489	133,561	360,400	0.533	163,561
37	6,960 초과 ~ 7,380 이하	201,876	0.282	346,800	0.484	144,924	376,800	0.526	174,924
38	7,380 초과 ~ 7,840 이하	207,192	0.272	364,400	0.479	157,208	394,400	0.518	187,208
39	7,840 초과 ~ 8,320 이하	212,648	0.263	383,200	0.474	170,552	413,200	0.511	200,552
40	8,320 초과 ~ 8,820 이하	218,244	0.255	402,800	0.470	184,556	432,800	0.505	214,556
41	8,820 초과 ~ 9,360 이하	223,980	0.246	423,600	0.466	199,620	453,600	0.499	229,620
42	9,360 초과 ~ 9,930 이하	229,856	0.238	445,800	0.462	215,944	475,800	0.493	245,944
43	9,930 초과 ~ 10,600 이하	236,011	0.230	470,600	0.458	234,589	500,600	0.488	264,589
44	10,600 초과 ~ 11,200 이하	242,167	0.222	496,000	0.455	253,833	526,000	0.483	283,833
45	11,200 초과 ~ 11,900 이하	248,462	0.215	522,000	0.452	273,538	552,000	0.478	303,538
46	11,900 초과 ~ 12,600 이하	255,038	0.208	550,000	0.449	294,962	580,000	0.473	324,962
47	12,600 초과 ~ 13,400 이하	261,753	0.201	580,000	0.446	318,247	610,000	0.469	348,247
48	13,400 초과 ~ 14,200 이하	268,608	0.195	612,000	0.443	343,392	642,000	0.465	373,392

〈표 5〉 계속

등급	소득금액(만원)	현행 보험료	연간 보험료율	1인(소득 20% 반영)			2인(소득 25% 반영)		
				개정 보험료	개정 보험료율	차액	개정 보험료	개정 보험료율	차액
49	14,200 초과 ~ 15,000 이하	275,463	0.189	644,000	0.441	368,537	674,000	0.462	398,537
50	15,000 초과 ~ 15,800 이하	282,598	0.184	676,000	0.439	393,402	706,000	0.458	423,402
51	15,800 초과 ~ 16,600 이하	314,355	0.194	708,000	0.437	393,645	738,000	0.456	423,645
52	16,600 초과 ~ 17,400 이하	346,113	0.204	740,000	0.435	393,887	770,000	0.453	423,887
53	17,400 초과 ~ 18,300 이하	379,689	0.213	774,000	0.434	394,311	804,000	0.450	424,311
54	18,300 초과 ~ 19,200 이하	415,363	0.222	810,000	0.432	394,637	840,000	0.448	424,637
55	19,200 초과 ~ 20,100 이하	451,038	0.230	846,000	0.431	394,962	876,000	0.446	424,962
56	20,100 초과 ~ 21,100 이하	488,811	0.237	884,000	0.429	395,189	914,000	0.444	425,189
57	21,100 초과 ~ 22,100 이하	528,402	0.245	924,000	0.428	395,598	954,000	0.442	425,598
58	22,100 초과 ~ 23,200 이하	569,953	0.252	966,000	0.426	396,047	996,000	0.440	426,047
59	23,200 초과 ~ 24,400 이하	615,560	0.259	1,012,000	0.425	396,440	1,042,000	0.438	426,440
60	24,400 초과 ~ 25,600 이하	663,126	0.265	1,060,000	0.424	396,874	1,090,000	0.436	426,874
61	25,600 초과 ~ 26,800 이하	710,692	0.271	1,108,000	0.423	397,308	1,138,000	0.434	427,308
62	26,800 초과 ~ 28,200 이하	762,315	0.277	1,160,000	0.422	397,685	1,190,000	0.433	427,685
63	28,200 초과 ~ 29,500 이하	815,757	0.283	1,214,000	0.421	398,243	1,244,000	0.431	428,243
64	29,500 초과 ~ 31,000 이하	871,297	0.288	1,270,000	0.420	398,703	1,300,000	0.430	428,703
65	31,000 초과 ~ 32,500 이하	930,755	0.293	1,330,000	0.419	399,245	1,360,000	0.428	429,245
66	32,500 초과 ~ 34,100 이하	992,171	0.298	1,392,000	0.418	399,829	1,422,000	0.427	429,829
67	34,100 초과 ~ 35,800 이하	1,057,504	0.303	1,458,000	0.417	400,496	1,488,000	0.426	430,496
68	35,800 초과 ~ 37,600 이하	1,126,895	0.307	1,528,000	0.416	401,106	1,558,000	0.425	431,106
69	37,600 초과 ~ 39,400 이하	1,198,244	0.311	1,600,000	0.416	401,757	1,630,000	0.423	431,757
70	39,400 초과	1,273,650	0.323	1,636,000	0.415	362,350	1,666,000	0.423	392,350

보험료율이 0.6%보다 컸었기 때문에 15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의 보험료는 감소하고 이상 소득자들의 소득 기준 보험료는 증가된다. 특히 소득 5천만원 이상 계층은 10만원 이상의 보험료 변동 폭을 보이고 있다. 현행보다 고소득층의 보험료율은 인상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율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의 변동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원화된 정율(3천만원 이

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0.6%의 보험료율을,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0.4%의 보험료율 적용)을 적용했기 때문에 아직도 소득 기준 보험료 부담에 있어 역진성이 남아 있다. 부담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는 원칙은 확립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 비례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없다. 최소한 누진적은 아니어도 직장 가입자의 경우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형 정

률까지는 비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 2의 경우 소득 3천만 원까지 0.7%의 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 기준 보험료율이 0.7% 보다 높았던 1천만원 이하 소득자들의 경

우 보험료 부담이 떨어지게 되고 그 이상 소득자들의 보험료는 증가하게 된다.

재산의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한 재산 등급별 개정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소득기준 등급별 현행 보험료율 및 개정보험료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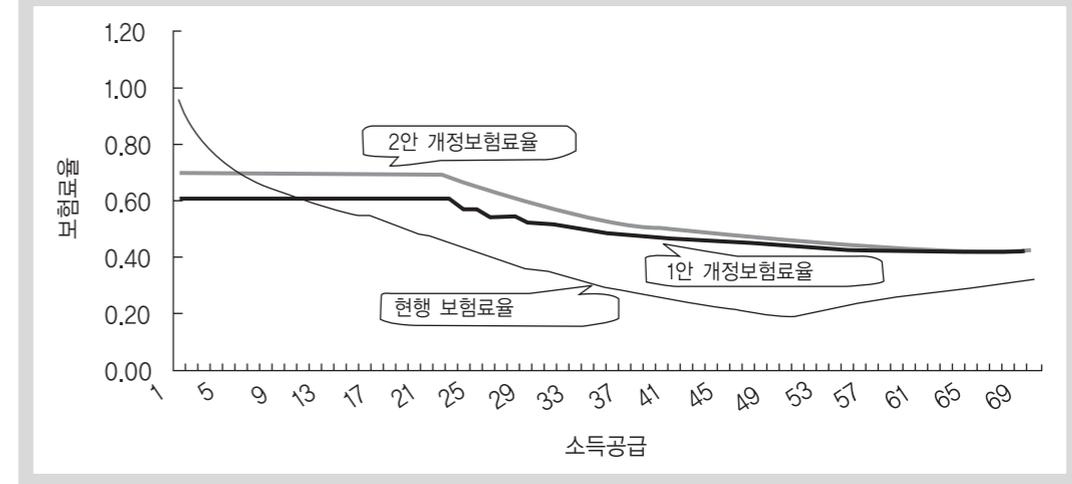


표 6. 재산기준 등급별 현행 보험료와 모형간 차이 비교

재산금액(만원)	현행 보험료	보험료율	1인			2인		
			개정 보험료	개정 보험료율	차액	개정 보험료	개정 보험료율	차액
0								
100 초과 ~ 450 이하	3,078	0.11	1,513	0.055	-1,565	1,375	0.050	-1,703
450 초과 ~ 900 이하	6,156	0.09	3,713	0.055	-2,443	3,375	0.050	-2,781
900 초과 ~ 1,350 이하	9,233	0.08	6,188	0.055	-3,046	5,625	0.050	-3,608
1,350 초과 ~ 1,800 이하	13,570	0.09	8,663	0.055	-4,908	7,875	0.050	-5,695
1,800 초과 ~ 2,250 이하	17,068	0.08	11,138	0.055	-5,930	10,125	0.050	-6,943
2,250 초과 ~ 2,700 이하	20,425	0.08	13,613	0.055	-6,813	12,375	0.050	-8,050
2,700 초과 ~ 3,150 이하	23,923	0.08	16,088	0.055	-7,835	14,625	0.050	-9,298
3,150 초과 ~ 3,600 이하	27,281	0.08	18,563	0.055	-8,718	16,875	0.050	-10,406
3,600 초과 ~ 4,050 이하	30,638	0.08	21,038	0.055	-9,601	19,125	0.050	-11,513

〈표 6〉 계속

재산금액(만원)	현행 보험료	보험료율	1안			2안		
			개정 보험료	개정 보험료율	차액	개정 보험료	개정 보험료율	차액
4,050 초과 ~ 4,500 이하	34,136	0.08	23,513	0.055	-10,623	21,375	0.050	-12,761
4,500 초과 ~ 5,020 이하	37,493	0.08	26,180	0.055	-11,313	23,800	0.050	-13,693
5,020 초과 ~ 5,590 이하	41,131	0.08	29,178	0.055	-11,953	26,525	0.050	-14,606
5,590 초과 ~ 6,220 이하	44,768	0.08	32,478	0.055	-12,291	29,525	0.050	-15,243
6,220 초과 ~ 6,930 이하	48,126	0.07	36,163	0.055	-11,963	32,875	0.050	-15,251
6,930 초과 ~ 7,710 이하	51,064	0.07	40,260	0.055	-10,804	36,600	0.050	-14,464
7,710 초과 ~ 8,590 이하	54,001	0.07	44,825	0.055	-9,176	40,750	0.050	-13,251
8,590 초과 ~ 9,570 이하	57,639	0.06	49,940	0.055	-7,699	45,400	0.050	-12,239
9,570 초과 ~ 10,700 이하	61,416	0.06	55,743	0.055	-5,674	50,675	0.050	-10,741
10,700 초과 ~ 11,900 이하	65,054	0.06	62,150	0.055	-2,904	56,500	0.050	-8,554
11,900 초과 ~ 13,300 이하	68,551	0.05	69,300	0.055	749	63,000	0.050	-5,551
13,300 초과 ~ 14,800 이하	72,188	0.05	77,275	0.055	5,087	70,250	0.050	-1,938
14,800 초과 ~ 16,400 이하	74,847	0.05	85,800	0.055	10,954	78,000	0.050	3,154
16,400 초과 ~ 18,600 이하	78,204	0.04	96,250	0.055	18,046	87,500	0.050	9,296
18,600 초과 ~ 20,400 이하	81,981	0.04	107,250	0.055	25,269	97,500	0.050	15,519
20,400 초과 ~ 22,700 이하	85,479	0.04	114,650	0.053	29,171	104,650	0.049	19,171
22,700 초과 ~ 25,300 이하	89,116	0.04	122,000	0.051	32,884	112,000	0.047	22,884
25,300 초과 ~ 28,100 이하	92,194	0.03	130,100	0.049	37,906	120,100	0.045	27,906
28,100 초과 ~ 31,300 이하	95,272	0.03	139,100	0.047	43,828	129,100	0.043	33,828
31,300 초과 ~ 34,900 이하	98,769	0.03	149,300	0.045	50,531	139,300	0.042	40,531
34,900 초과 ~ 38,800 이하	102,267	0.03	160,550	0.044	58,283	150,550	0.041	48,283
38,800 초과 ~ 43,200 이하	105,904	0.03	173,000	0.042	67,096	163,000	0.040	57,096
43,200 초과 ~ 48,100 이하	109,822	0.02	186,950	0.041	77,129	176,950	0.039	67,129
48,100 초과 ~ 53,600 이하	113,599	0.02	202,550	0.040	88,951	192,550	0.038	78,951
53,600 초과 ~ 59,700 이하	117,656	0.02	219,950	0.039	102,294	209,950	0.037	92,294
59,700 초과 ~ 66,500 이하	122,133	0.02	239,300	0.038	117,167	229,300	0.036	107,167
66,500 초과 ~ 74,000 이하	126,610	0.02	260,750	0.037	134,141	250,750	0.036	124,141
74,000 초과 ~ 82,400 이하	131,086	0.02	284,600	0.036	153,514	274,600	0.035	143,514
82,400 초과 ~ 91,800 이하	135,983	0.02	311,300	0.036	175,317	301,300	0.035	165,317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41,579	0.01	347,400	0.036	205,821	332,200	0.034	190,621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46,755	0.01	358,500	0.033	211,745	348,500	0.032	201,745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51,652	0.01	370,500	0.031	218,848	360,500	0.030	208,848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57,388	0.01	384,500	0.029	227,113	374,500	0.028	217,11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63,403	0.01	400,000	0.027	236,597	390,000	0.026	226,597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68,859	0.01	417,000	0.025	248,141	407,000	0.024	238,141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74,036	0.01	436,000	0.023	261,964	426,000	0.023	251,964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80,471	0.01	457,000	0.022	276,529	447,000	0.022	266,529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86,906	0.01	480,000	0.021	293,094	470,000	0.020	283,094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93,062	0.01	506,000	0.020	312,938	496,000	0.019	302,938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99,917	0.01	535,000	0.019	335,083	525,000	0.018	325,083
300,000 이상	206,353	0.01	550,000	0.018	343,648	540,000	0.018	333,648

모형 1의 경우 재산 수준 1억 19백만 원 이하에서는 현행 보험료율이 정율선 0.55%보다 컸기 때문에 1억 19백만 원 이하의 저자산가들의 보험료는 감소하고 그 이상 재산보유자들의 보험료는 증가된다. 특히 재산 규모 6억 원 이상 계층은 10만원 이상의 보험료 변동 폭을 보이고 있다. 보험료의 변동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원화된 정율(2억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0.055%의 보험료율을, 2억부터 10억 원까지는 0.03%, 1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0.001%의 보험료율 적용)를 적용했기 때문에 아직도 재산 기준 보험료 부담에 있어 역진성이 남아 있다. 재산은 stock(저량)으로 잉여 소득에 의해 축적되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 조세처럼 누진율을 적용하기 어렵다. 부담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는 원칙은 확립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 비례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공감대는 아

직 않다.

모형 2의 경우 2억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0.05%의 보험료율을, 2억부터 10억 원까지는 0.03%, 1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0.001%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모형 1에 비해 재산의 배분비도 작고 보험료율도 낮게 책정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재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계층의 재산 보험료는 감소하고 반면 재산이 많은 계층의 재산 보험료는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형별 현행 체계 대비 보험료 변동 세대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 1안의 경우 75.7%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고소득, 고재산 중심의 약 24% 세대의 보험료가 증가한다. 2안의 경우도 인상, 인하세대의 비율은 1안과 거의 유사하다.

그림 3. 재산기준 등급별 현행 보험료율 및 개정보험료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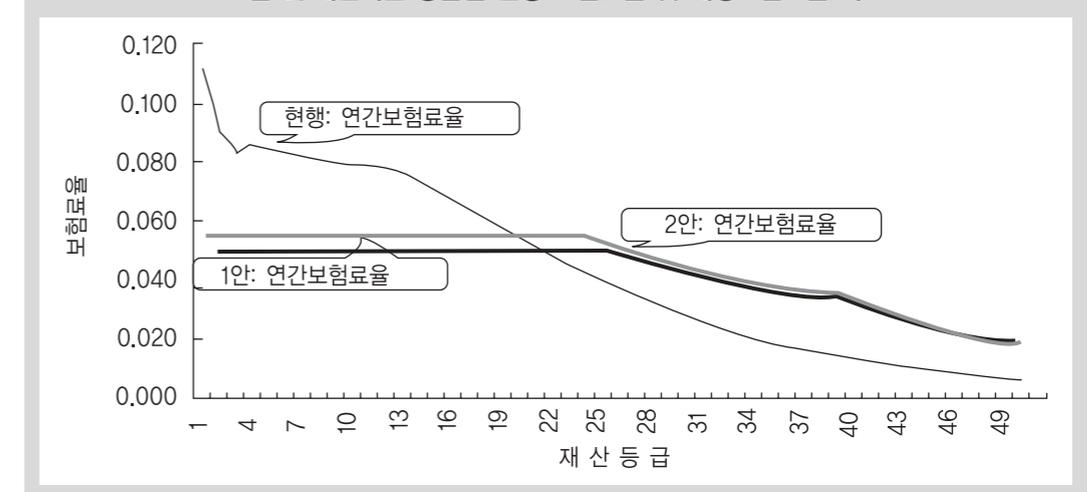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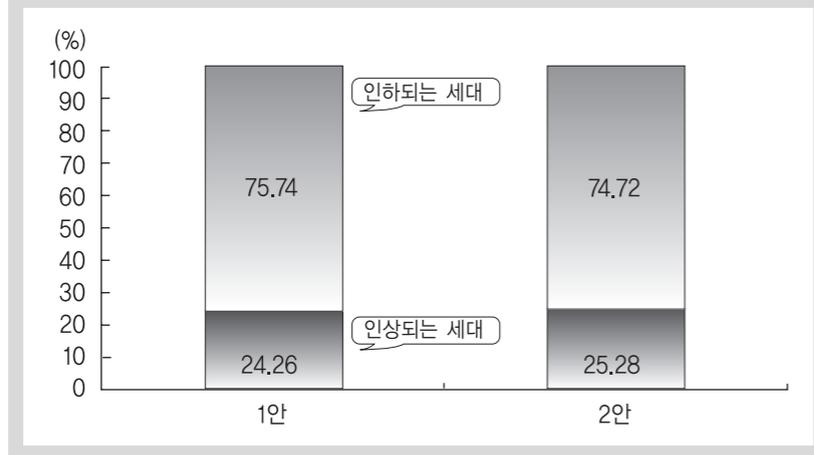


표 7. 모형별 인상, 인하세대 분포

구분	1안		2안	
	세대수	백분율	세대수	백분율
인상되는 세대	18,217	24.26	18,987	25.28
인하되는 세대	56,888	75.74	56,118	74.72
합계	75,105	100.00	75,105	100.00

그림 4. 개선방안별 인상, 인하세대 분포



보험료 구간별로 볼때 10만원 이하세대는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10만원 이상세대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개선방안이 500만원 이상 세대 등 보험료가 높았던 세대는 보험료가 더 인상되고 저소득층은 보험료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 5. 맺은말

본 고에서는 199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

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상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 문제점들을 단기적으로 개선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 부과체계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던 500만원 기준선에 의한 이원화 문제와 평가소득 보험료에 계산되는 재산, 자동차의 이중부과 문제 그리고 소득과 재산 등급표의 역진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개선함으로써 복잡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하여 가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였고 고질적인 문제제기들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표 8. 보험료 구간별 변동액 비교

보험료 구간	대상세대	1안	2안
10,000원 이하	4,231	-1,357	-1,387
10,000~20,000원	12,550	-4,053	-4,154
20,000~30,000원	8,588	-6,860	-6,941
30,000~40,000원	7,362	-9,938	-10,070
40,000~50,000원	6,209	-11,340	-11,534
50,000~60,000원	5,489	-13,372	-13,500
60,000~70,000원	5,064	-13,265	-12,903
70,000~80,000원	4,253	-13,182	-12,764
80,000~90,000원	3,695	-12,830	-12,610
90,000~100,000원	3,055	-10,989	-11,016
100,000~150,000원	9,863	3,600	2,482
150,000~200,000원	3,298	60,891	62,497
200,000원 초과	1,710	193,683	206,108

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계층에 보험료가 급격히 높아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사실 이러한 급격한 보험료 변동으로 인한 민원 등이 두려워 과거 10여 년 동안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앞에서 설명

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측면이 많다. 따라서 이제 한번의 변화는 불가피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된다. 따라서 고소득자나 고재산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검토하여 원활하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의 단기적 개선방안이 향후 직장가입자와 소득기준으로 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가는 중간 단계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도 기대해 본다. **국립**